

# 서울연구원 · 한국정치학회 학·연 상호 협력 업무협약서

서울연구원과 한국정치학회(이하 '양 기관' 이라 한다)는 상호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(이하 '이 협약' 이라 한다.)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양 기관 간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, 궁극적으로 서울의 발전과 서울시정 성과를 확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력 범위)** 양 기관은 아래의 각 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.

1. 정치학 및 이에 관련된 연구에 대한 주요 이슈 발굴 및 공동연구
2. 성과 확산을 위한 공개 학술행사(세미나, 토론회 등) 개최
3.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치 및 대의민주주의 발전 방안 협력
4. 학술자료,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상호 교류
5. 기타 양 기관의 상호 관심분야 협력

**제3조(협약 준수)** 양 기관은 이 협약 사항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.

1.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2. 양 기관은 상호간에 이견이 존재할 경우에도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3. 별도의 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 협정을 체결한 후 추진한다.

**제4조(경비 부담)**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**제5조(효력 발생 및 협약 기간)**

1. 이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 대표의 직인을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협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.
2. 양 기관이 협약 해지에 합의하거나,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.

**제6조(비밀 유지)** 양 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, 연구 활동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.

**제7조(협약서 교환)** 양 기관은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상호 합의하고, 양 기관 대표의 직인을 날인한 협약서를 각 1부씩 보관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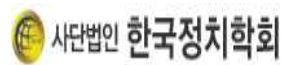
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기관 대표의 직인을 이 협약서에 날인하였다.

2017년 4월 11일



서울연구원  
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7

원장



한국정치학회  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83-11 한국  
정치학회 빌딩 4층

회장

# 한국정치학회 · 서울연구원 학·연 상호 협력 업무협약서

한국정치학회와 서울연구원(이하 '양 기관' 이라 한다)은 상호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(이하 '이 협약' 이라 한다.)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양 기관 간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, 궁극적으로 서울의 발전과 서울시정 성과를 확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력 범위)** 양 기관은 아래의 각 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.

1. 정치학 및 이에 관련된 연구에 대한 주요 이슈 발굴 및 공동연구
2. 성과 확산을 위한 공개 학술행사(세미나, 토론회 등) 개최
3.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치 및 대의민주주의 발전 방안 협력
4. 학술자료,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상호 교류
5. 기타 양 기관의 상호 관심분야 협력

**제3조(협약 준수)** 양 기관은 이 협약 사항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.

1.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2. 양 기관은 상호간에 이견이 존재할 경우에도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3. 별도의 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 협정을 체결한 후 추진한다.

**제4조(경비 부담)**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**제5조(효력 발생 및 협약 기간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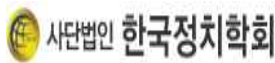
1. 이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 대표의 직인을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협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.
2. 양 기관이 협약 해지에 합의하거나,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.

**제6조(비밀 유지)** 양 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, 연구 활동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.

**제7조(협약서 교환)** 양 기관은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상호 합의하고, 양 기관 대표의 직인을 날인한 협약서를 각 1부씩 보관한다.

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기관 대표의 직인을 이 협약서에 날인하였다.

2017년 4월 11일



**한 국 정 치 학 회**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83-11 한국  
정 치 학 회 빌 디ング 4 층

**회 장**



**서 울 연 구 원**

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7

**원 장**

---

---